#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10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윤호중·전용기·강준현

이학영 • 박홍배 • 박해철

이재관 • 황명선 • 허성무

문금주 · 오세희 · 복기왕

임호선 · 김교흥 · 조계원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헌법 전문은 '우리 대한국민은 3·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·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,'라고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,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,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·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음.

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, 반역사적 사태 라 할 수 있음.

이에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 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

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이용,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·게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공연히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·미화·왜곡하거나 찬양·고무·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·왜곡·날조한 자는 장·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·발전시키려는 것임(안 제3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하는 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제3조제2항 중 "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,"를 "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, 제33조의2를 적용하며,"로 한다.

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,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33조의2(정무직공무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- 1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 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의 이용,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·게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·미화·왜곡하거나 찬양·고무·선전한 자
- 2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 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의 이용,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·게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·왜곡·날조

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범위) ① (생 략)	제3조(적용 범위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	②
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	
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	<u>제33조와 제69조를</u>
<u>적용하지 아니하고,</u> 대통령령으	적용하지 아니하고, 제33조의2
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	를 적용하며,
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	
적용하지 아니한다.	
③ • ④ (생 략)	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33조의2(정무직공무원의 결격
	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	에 해당하는 자는 정무직공무
	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	1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
	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
	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
	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
	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, 전
	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
	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공연
	히 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

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 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 죄를 정당화 · 미화 · 왜곡하거 나 찬양・고무・선전한 자

2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 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|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, 전 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• 게 시 또는 상영, 그 밖에 공연 히 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 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 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 인 · 왜곡 · 날조한 자

제33조의2(벌금형의 분리 선고) 제33조의3(벌금형의 분리 선고) (현행 제33조의2와 같음)

(생 략)